



제400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62호)

2022.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명희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2. 3. 24.

다. 회 부 일 : 2022.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 제2항 및 제84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 및 세율조정

현행(법률 제17757호)	윤후덕·조명희·김태년의원안	노웅래의원안
☐ 기타소득의 종류(제21조) -상금·사례금·포상금·복권당첨금·뇌물·사행행위 이익 등 - <u>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기타소득에서 가상자산 소득 삭제 -(현행과 같음) <삭 제>
☐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율 및 과세최저한(제64조의3, 제84조) -세율 : <u>20%</u> -과세최저한 : <u>250만원</u>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율을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함(제64조의3, 제84조) -세율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과세최저한 : <u>5,000만원</u>	
☐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제87조의6) -주식·채권양도소득 등 <신 설>		☐ 금융투자소득에 가상자산소득 추가 -(현행과 같음) - <u>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u>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제87조의18)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주식형 펀드소득 :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 : 250만원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에 가상자산소득 포함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주식형 펀드소득, <u>가상자산소득</u> : 5,000만원 -(현행과 같음)

* 윤후덕의원안 2022. 1. 20. 발의(의안번호 14492), 노웅래의원안 2022. 1. 26. 발의(의안번호 14573), 조명희의원안 2022. 3. 24. 발의(의안번호 14962), 김태년의원안 2022. 6. 10.

- 개정안 4건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으로,
윤후덕의원안, 조명희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의 경우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유지하되 실질상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20~25%의 세율과 5,000만원의 기본공제 및 결손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노웅래의원안의 경우 현재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두 종류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통적으로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아,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규율(세율 및 기본공제액)하려는 것인데,
윤후덕의원안, 조명희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은 형식상으로는 소득분류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두되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한 세율과 공제액 및 결손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고,
노웅래의원안은 가상자산소득을 형식적으로도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체계를 변경하는 내용임.
- 현재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 기타소득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가상자산소득 외에 상금·포상금·

복권당첨금, 뇌물·사행행위로 인한 이익, 원고료·인세·수수료소득 등이 해당하며¹⁾,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 및 채권의 양도소득, 펀드환매이익,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등이 해당됨²⁾.

[법률 제17757호(시행 전 법률)에 따른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종류 비교]

구분	기타소득(제21조)	금융투자소득(제87조의6)
항목	상금·포상금·복권당첨금 뇌물·사행행위 이익 상표권·영업권의 양도·대여소득 등 가상자산소득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펀드환매이익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이익 등

□ 또한, 기타소득과 금융투자소득의 과세체계를 비교해 보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기준³⁾인 경우 20% 세율이 적용되며, 가상자산 기준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데,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로 인한 소득에는 5,000만

1) 그 밖에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 직무발명보상금,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 점유로 취득한 자산, 위약금 및 배상금 등이 해당함(「소득세법」 제21조 참조)

2)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개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6.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3) 가상자산이나 복권당첨금 등은 분리과세대상이며, 그 밖에 다른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세대상자가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합산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14조제1항제8호), 개정안 검토의 대상은 가상자산이므로 분리과세의 경우만 상정함.

원의 기본공제가, 그 밖의 소득에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그 밖에 투자결손금⁴⁾에 대한 5년간의 이월공제⁵⁾가 가능함.

윤후덕의원안, 조명희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두되,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하고,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투자결손금에 대한 5년간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두 개정안의 실질적 효과는 세율과 기본공제 등에서 동일함.

- 4건의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대상인 주식 거래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식 거래와 동일한 세율, 기본공제액 및 결손공제 이월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가상자산은 본래적으로 그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가상자산거래소가 설립된 후부터 주식처럼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유통되기 시작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그 발행 목적 또는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⁶⁾,

즉각적인 현금 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점도 유사하기 때문에⁷⁾ 주식거래와 동일한 과세체제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4)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함(「소득세법」 제87조의7제2항)

5) 투자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이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현황」, 2021. 7.

7) 이동건,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17차 조세정책 세미나. 2021. 4. 13.

□ 또한, 노웅래의원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바,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체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투자손실로 인해 투자결손금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세액이 없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과세기간에 그 결손금액을 공제하지 못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 특성상 그 손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기타소득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데, 가상자산의 경우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보다도 더 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⁸⁾.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투기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가상자산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1.9조원 수준에서 10년 만에 약 1,000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1년 11월 2,930조원

8) 예를 들어, 1차년도에 2억원의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보고 2차년도에 1억원의 가상자산 투자이득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 A의 경우 총액기준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2차년도에 약 2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까지 급등한 후 6월에 절반 이하인 1,377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한 뒤 최근 다시 2,000조원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매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세계시장규모 추이]



자료: CoinMarketCap

2021년 하반기 국내 유통 가상자산의 평균 최대하락폭(Maximum Draw Down, MDD)은 약 65%로 유가증권 시장의 4.4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가상자산소득을 주식의 경우와 유사하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는 메시지로 시장에 전달될 수 있어,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인해 가격변동성 및 투자 위험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가능함.

둘째, 가상자산소득에 국내상장주식 등의 경우와 동일한 5,000만원

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적 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도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비상장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5,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87조의18)⁹⁾,

이러한 국내주식 등의 경우 국내기업의 자본확충·조달을 위해 투자금 유입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높은 기본공제가 적용된 것임.

반면, 가상자산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본조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주식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임.

□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2021년 정기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개정안¹⁰⁾을 병합심사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을 고려하여 최초 정해진 바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 참고로, 주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을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9) 그 밖의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됨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의안번호 10077),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2021. 5. 14. 발의(의안번호 10127),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21. 7. 6. 발의(의안번호 11370),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2021. 10. 13 발의(의안번호 12832)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경우 ‘자본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 부과 체계의 차이로 인해 일의적인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 비교 시에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소득이나 양도소득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음¹¹⁾.

[주요국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명칭	capital gains	capital gains	plus-values	Veräußerungsgewinne	雑所得
분류	자본소득	자본소득	자본소득	자본소득	기타소득

자료: 다음 각 홈페이지 참조

<https://taxbit.com/blog/cryptocurrency-tax-laws-in-2021-what-you-need-to-know>

<https://www.investorschronicle.co.uk/ideas/2021/05/11/how-your-crypto-gains-are-taxed/>

<https://www.quechoisir.org/actualite-cryptomonnaies-quelle-fiscalite-pour-les-bitcoins-n91554/>

<https://wendl-koehler.de/rechtliches/kryptowaehrung-steuererklaerung/>

<https://coin.z.com/jp/column/tax/>

문 의 처

02)6788-5155

11)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자본소득세는 가상자산 외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부과되며, 영국의 경우 자본소득세는 가상자산 외에 주식과 주택 등에 대해 부과되며, 프랑스의 경우 자본소득세는 이자수입, 배당수입, 가상자산수입 등에 부과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생략)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 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 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 금액”이라 한다)에서 <u>250만원</u> <u>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u> <u>하여</u>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5천만원</u> <u>을 뺀 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u> <u>과세표준”이라 한다)에 다음의</u> <u>세율을 적용하여</u>-----.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상자산소득과세 표준</th><th style="text-align: center;">세 율</th></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이하</td><td style="text-align: center;">100분의 20</td></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억원 초과</td><td style="text-align: center;">6천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td></tr> </table>	가상자산소득과세 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가상자산소득과세 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 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1. 2. (생략)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 ----- ----- -. 1. 2. (현행과 같음)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u>250만원</u> 이하인 경우	3. ----- ----- <u>5천만원</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